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

이 강 빈*

목 차

- I. 서 론
- II. 우주관련 조약상의 손해배상책임
- III. 주요국 국내우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 IV. 우주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검토
- V. 우주손해배상책임 관련법규의 개선방안
- VI. 결 론

* 상지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I. 서론

우주활동과 같은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타방의 법익을 침해하여 인적 혹은 물적으로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상황이 존재하게 되며, 따라서 특별한 주의 의무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무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다.

우주활동 과정에서 특히 우주물체의 발사 또는 운용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각종의 손해 또는 위법행위의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태 즉 ① 발사 및 회수의 실패로 인한 지상의 인명 또는 재산 피해, ② 우주물체의 파편 또는 인공위성 자체의 추락, ③ 환경오염 문제, ④ 우주공간에서의 타 물체와의 충돌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우주활동 전후단계의 어느 시점에서든 발생 가능한 손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손해배상을 위하여 국가책임 관련 국제조약의 채택과 아울러 각국의 우주손해배상책임 관련 국내입법이 필요한 것이다.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Outer Space Treaty of 1967) 및 1972년 우주손해책임조약 (Liability Convention of 1972)이 채택 발효되고 있으며,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호주 등 주요국들은 우주손해배상책임 관련 국내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손해배상책임 관련 국내입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나로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세계 13번째의 우주센터 보유국이 되었으며, 2009년 8월에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 2호가 이곳에서 우리의 자력으로 처음 발사되었고, 이어 2010년 6월에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비록 나로호의 두번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지만, 발사체 개발과 발사 기술에 있어 상당한 진보를 이루어 냈으며, 향후 우주개발사업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현재 우주개발사업은 국가, 국제기구 및 민간 기업에 의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우주물체의 발사 및 운영과정에서 고도의 위험성으로 인해 물적·인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주손해 발생 시 배상책임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과 현행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으로 우주조약 및 우주손해책임조약상의 국가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 러시아, 호주 등의 국내우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고찰함과 더불어 우주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을 검토하며, 우주손해배상책임 관련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선이(2007)의 연구¹⁾에서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제정경위, 주요내용, 손해배상보험, 각국의 우주사고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김두환(2009)의 연구²⁾에서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주요내용과 논평, 우주정책의 장래 과제 및 아시아 우주기구의 설립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상기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와의 차이점은 본 연구에서는 우주손해배상책임 관련 국제조약 및 주요국의 국내입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제도와 우주손해배상책임 관련사례들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는 점이다.

Ⅱ. 우주관련 조약상의 손해배상책임

1. 우주조약상의 손해배상책임

(1) 정부기관 및 비정부주체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

1967년 우주조약 (Outer Space Treaty of 1967)³⁾ 제6조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주체가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
- 1) 김선이, “우주손해배상법에 관한 약간의 고찰”, 『항공우주법학회지』제22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7. 12.
 - 2) 김두환, “한국에 있어 우주법의 주요내용, 논평과 장래의 과제”, 『항공우주법학회지』제24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9. 12.
 - 3) 우주조약의 원명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통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이며, 이 조약은 “우주공간에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특별위원회”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에서 기초하여 UN 총회에서 1966년 12월 19일 채택되고 1967년 1월 27일 서명하여 동년 10월 13일 공포·발효되었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의 비정부주체의 활동은 본 조약의 관계 당사국에 의한 인증과 지속적인 감독을 요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국제기구가 활동을 행한 경우에는, 본 조약에 의한 책임을 동 국제기구와 이 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본 조약의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우주에서 수행된 활동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는 일반원칙과 더불어 비정부주체 즉 사적인 주체가 행한 활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이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기구가 행한 우주활동에 대해 국제기구와 그 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주활동을 행하는 실제의 주체가 정부기관이든 사기업 기타의 비정부주체이든 그 지위 여하에 관계없이 국가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책임의 집중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기업 기타 비정부주체가 우주활동을 행하려면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의 인증 및 지속적인 감독을 요한다.

국가는 적절한 관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적인 주체의 활동에 대한 국제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를 주장할 수 없는 바, 이는 국제적 책임에 있어서 사적인 주체의 우주활동도 국가의 활동과 동등하게 취급됨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는 사기업이 우주조약의 규정에 따라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조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국제적 책임을 지며 이러한 사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조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이 국가에 직접 귀속된다.⁴⁾

여기서 국제기구라 함은 국가가 회원국으로 있는 정부 간 국제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만일 정부 간 국제기구가 아닌 기구에 의한 우주활동의 경우는 관련 국가의 허가와 통제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손해도 관련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⁵⁾

(2)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우주조약 제7조에 의하면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4) 이영진·김두환·조홍제, “우주법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방향 연구”, 외교통상부 용역과제, 2008. 9. 30, p.98.

5) 김한택, 『항공우주법』, 지인북스, 2007, p.100.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대기권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국제적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우주조약 제6조의 국가의 국제적 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발사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우주조약상의 국가의 국제적 책임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1972년 우주손해책임조약(Liability Convention)이 채택되었다.

여기서 손해의 발생장소는 지상, 대기권,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이며, 지상에 있어서의 손해는 사람 및 재산에 관한 손해를 의미하며, 대기권에 있어서의 손해는 주로 통상의 항공기에 대한 손해를 의미하며,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에 있어서의 손해는 다른 조약당사국의 우주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장소에 있어서 우주물체의 상승, 비행, 강하, 착륙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우주조약 제7조의 주된 적용대상이 된다.⁶⁾

2. 우주손해책임조약상의 손해배상책임

(1) 우주물체 발사국의 손해배상책임 원칙

1972년 우주손해책임조약 (Liability Convention of 1972)⁷⁾ 제2조에 의하면 “자국의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 중에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damage)라 함은 인명의 손실, 인체의 상해 또는 기타 건강의 손실 또는 국가나 개인의 재산, 자연인이나 법인의 재산 또는 정부 간 국제기구의 재산의 손실 또는 손해를 말한다.⁸⁾ 책임조약에서 의도하는 손해는 직접적인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손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예비토의에서

6) 이영진 외 2인, 전계 보고서, p.99.

7) 우주손해책임조약의 원명은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이며, 이 조약은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특별위원회”(COPUOS)에서 초안이 작성되고 UN 총회에서 1971년 11월 29일 채택되고 1972년 9월 1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 1월 14일 공포·발효되었다.

8) 우주손해책임조약 제1조 (a).

몇몇 대표들은 간접적인 손해는 실무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⁹⁾

우주손해책임조약에서 우주물체의 발사국에 절대적 책임 (absolute liability)을 지우고 있는 것은 우주활동이 고도의 위험을 내포하는 초위험적 행위로서 손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고 우주활동에 의해 이익을 얻는 발사국이 당해 활동에 관한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위험책임주의’의 사고로부터 나온 것이다.¹⁰⁾

절대책임제도에 의하면 국가는 여하한 상황 하에서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경우조차도 책임을 져야 한다.¹¹⁾ 한편 우주손해책임조약에 의하면 발사국 측의 절대책임의 면제는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 하에 행하여진 청구국 또는 청구국을 대표하는 자연인 및 법인 측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중대한 부작위로 인하여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발사국이 입증하는 한도까지 인정된다. 특히 유엔헌장 및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에 의하여 행하여진 활동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면책도 인정하지 않는다.¹²⁾

또한 우주손해책임조약에 의하면 이 협약의 규정은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① 발사국의 국민에 대한 손해, ② 발사 시 또는 발사 시 이후 어느 시기로부터 하강할 때까지의 단계에서 그 우주물체의 작동에 참여하는 동안 또는 발사국의 초청을 받아 발사 또는 회수 예정지역의 인접지에 있는 동안의 외국인에 대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¹³⁾

이는 결과적으로 발사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내·외국인에 대한 피해는 동 업체의 등록국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발사국은 자국민에 대한 피해를 국내법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¹⁴⁾

우주손해책임조약 제3조에 의하면 “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발사국의 우주물

9) I. H. Ph. Diederiks-Verschoor and V.Kopal, *An Introduction to Space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8, p.139.

10) 홍순길·신홍균·김종복, 『신국제항공우주법』, 항공대학교 출판부, 2006, p.279.

11) I. H. Ph. Diederiks-Verschoor and V.Kopal, *op.cit.*, p.37.

12) 우주손해책임조약 제6조.

13) 우주손해책임조약 제7조.

14) 박원화, 『우주법』, 명지출판사, 2009, p.91.

체 또는 동 우주물체상의 인체 또는 재산이 타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후자는 손해가 후자의 과실 또는 후자가 책임져야 할 사람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주물체의 발사 후 지구표면 이외의 지역 즉 대기권이나 우주공간 또는 천체에서 우주물체 상호 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우주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간의 관계로서 전술한 발사국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할 경우와는 달리 위험부담에 있어서 특별한 취급을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발사국에 과실책임을 지우고 있다.¹⁵⁾

우주손해책임조약에 의하면 2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공동으로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에는 그들은 발사한 손해에 대하여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한 바 있는 발사국은 공동발사의 타 참가국에 대하여 구상권을 보유한다. 우주물체가 발사된 지역 또는 시설의 소속국은 공동 발사의 참가국으로 간주된다.¹⁶⁾

여기서 발사국 이외에 예컨대 발사에 대해 기술이나 과학과 그 밖의 제공을 간접적으로 행한 국가에 대해서는 동일한 정도의 책임이 지워진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배상청구는 이러한 국가에 대해서는 행해지지 않고 발사국에 집중한다.¹⁷⁾

(2) 발사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건

우주손해책임조약 제8조에 의하면 손해를 입은 국가 또는 자연인 또는 자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손해를 입은 국가는 발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를 입은 국민의 국적국이 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타 국가는 어느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발사국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의 국적 또는 손해 발생 지역국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또는 청구의사를 통고하지 않을 경우 제3국은 자국의 영주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발사국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동일지역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한 구제를 인정해 주려는 의도에서 국적국 이외에 손해발생지역의 국가와 영주

15) 이영진 외 2인, 전계 보고서, p.105.

16) 우주손해책임조약 제5조.

17) 이영진 외 2인, 전계 보고서, p.110.

민의 거주국가에게도 보충적으로 배상청구권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다.¹⁸⁾

우주손해책임조약에 의하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발사국에 제시되어야 한다. 당해 발사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국가는 제3국에 대하여 발사국에 요청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청구국과 발사국이 공히 UN의 회원국일 경우 청구국은 UN 사무총장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다.¹⁹⁾

우주손해책임조약에 의하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손해의 발생일 또는 책임져야 할 발사국이 확인한 일자 이후 1년 이내에 발사국에 제시될 수 있다. 만일 손해의 발생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책임져야 할 발사국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전기 사실을 알았던 이후 1년 이내에 청구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태만하지 않았다면 알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날로부터 1년을 어느 경우에도 초과할 수 없다. 위의 기한은 손해의 전체가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청구국은 청구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한의 만료 이후라도 손해의 전체가 밝혀진 이후 1년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²⁰⁾

우주손해책임조약에 의하면 이 협약에 의거 발사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제시는 청구국 또는 청구국이 대표하고 있는 자연인 및 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전 어떠한 국내적 구제의 완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협약상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또는 그 국가가 대표하고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발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 기관에 배상청구를 발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 기관에 제기되어 있거나 또는 관련 국가를 기속하고 있는 타 국제협정에 의거 제기되어 있는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는 이 협약에 의거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²¹⁾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피해자가 국제적 청구를 하기 전에 가해국가의 국내적 구제 절차를 완료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나,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²²⁾

18) 이영진 외 2인, 전계 보고서, p.112.

19) 우주손해책임조약 제9조.

20) 우주손해책임조약 제10조.

21) 우주손해책임조약 제11조.

22) 이영진 외 2인, 전계 보고서, p.113.

(3) 발사국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우주손해책임조약 제12조에 의하면 발사국이 이 협약에 의거 책임지고 지불해야 할 손해에 대한 배상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상태대로 자연인, 법인,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입은 손해가 배상될 수 있도록 국제법 및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발사국의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으로 원상회복의 정신에 의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상태의 회복을 가져오도록 배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78년 1월 발생한 구소련의 Cosmos 954호가 캐나다 영토에 추락한 사건에 있어서 캐나다 정부가 청구한 배상금액은 총 6,026,083.56 캐나다 달러이며, 이 금액은 동 위성이 캐나다 영토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야기되지 않았을 상태의 회복에 준한 것이었다. 결국 캐나다와 구소련은 3년간의 교섭을 거쳐 1981년 4월 Cosmos 954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캐나다의 배상청구 해결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여 구소련은 3백만 캐나다 달러를 지급하고 캐나다는 이를 수락하여 배상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였다.²³⁾

(4) 청구위원회의 설치 및 결정

우주손해책임조약 제14조에 의하면 청구국이 청구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발사국에 통고한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교적 교섭을 통하여 배상청구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당사국은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청구위원회 (Claims Commission)를 설치한다. 청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된다. 청구국과 발사국이 각각 1명씩 임명하며, 의장이 되는 제3의 1인은 당사국에 의하여 공동으로 선정된다. 각 당사국은 청구위원회 설치 요구 2개월 이내에 각기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위원회 설치 요구 4개월 이내에 의장 선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어느 한 당사국은 UN 사무총장에게 2개월의 추천 기간 내에 의장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²⁴⁾

청구위원회는 배상청구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고 타당할 경우, 지불하여야 할 배상액을 확정한다.²⁵⁾ 청구위원회의 결정은 당사국이 동의한 경우 최종적이며 기속

23)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XVIII, No. 4, July 1979, May 1981; 이영진 외 2인, 전제 보고서, pp.112, 115, 116.

24) 우주손해책임조약 제15조.

력이 있다.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청구위원회는 그 결정 또는 판정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청구위원회가 결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청구위원회는 가능한 신속히 그리고 청구위원회 설치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²⁶⁾

당사국이 청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종의 중재재판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²⁷⁾

Ⅲ. 주요국 국내우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1.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

(1) 우주손해의 정의

2008년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²⁸⁾의 목적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²⁹⁾

우주손해배상법 제2조제4호에서 “우주손해란 우주물체의 발사·운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의 사망·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훼손·망실과 같은 물적 손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은 우주손해배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우주손해를 ‘제3자의 손해’로 한정함으로써 우주물체 발사를 위한 내부자들의 손해에는 동 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물체 발사를 위한 탑재체 관리자와 발사체 발사자 및 부품 등 공급자들 간에는 대개 일정한 계약관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이들 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25) 우주손해책임조약 제18조.

26) 우주손해책임조약 제19조.

27) 이영진 외 2인, 전계 보고서, p.115.

28) 우주손해배상법은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14호로 제정 공포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9) 우주손해배상법 제1조.

경합하게 되므로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³⁰⁾

한편 동 조항은 우주손해를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직접손해에 한정하는 것으로 간접손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³¹⁾

(2)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우주손해배상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정부가 외국정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입은 우주손해의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³²⁾

이 조항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우주사고로 인하여 타 국가의 인명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타 국가가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 국민이나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때 동일하게 배제하거나 제한하도록 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³³⁾

(3) 우주물체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우주손해배상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 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우주손해와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는 우주기술 분야의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한 피해자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주개발사업의 고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우주물체 발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³⁴⁾

30) 김선이, 전계 논문, pp.5-6.

31) 김선이, 전계 논문, p.6.

32) 우주손해배상법 제3조제2항.

33) 김선이, 전계 논문, p.7.

한편 국가 간 무력충돌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발사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므로 무과실책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손해는 전문성 면에서 상호 대등한 지위에 있는 자들 간에 발생한 손해라는 점에서 무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³⁵⁾

우주손해배상법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긴 우주손해를 배상한 우주물체 발사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우주물체 발사 등에 제공될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노무를 포함)의 제공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해당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를 제공한 자나 그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 이는 우주개발사업의 낮은 상업성과 함께 우주물체 발사자와 자재나 역무 제공자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즉 경과실의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³⁶⁾

우주손해배상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우주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우주물체와 그 부품이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품공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상업성이 낮은 우주개발사업의 속성상 이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와 우주개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³⁷⁾

(4) 우주물체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에 의하면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한도는 2천 억원으로 한다. 이 조항은 우주개발사업이 고비용과 고위험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우주사고의 속성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규모가 방대하므로 손해전액을 배상하게 할 경우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발전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규정이다. 또한 우주손해에 대한 발사자의 무과실책임에 대응하여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도 볼 수 있다.³⁸⁾

34) 김선이, 전계 논문, p.7.

35) 김선이, 전계 논문, p.8.

36) 김선이, 전계 논문, p.8.

37) 김선이, 전계 논문, p.9.

(5)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의 가입

우주손해배상법 제6조에 의하면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가입하여야 할 보험금액은 이 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다.

이 조항은 우주개발진흥법 제15조³⁹⁾와 동일한 내용인 책임보험의 의무가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책임보험에 가입 의무자를 우주발사체의 발사자로 한정하고 탑재체 관리자에게는 가입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주발사체 발사자의 행위 종료이후 탑재체인 인공위성이 궤도를 비행하는 과정에서는 손해 발생의 확률이 높지 않으므로 탑재체 관리자에게 책임보험에 가입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⁴⁰⁾

(6)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우주물체 발사자 지원

우주손해배상법 제7조에 의하면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제6조제2항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전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한다.

이러한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정부의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와 손해배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범위 안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성이 낮은 우주개발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¹⁾

38) 김선이, 전계 논문, p.10.

39) 우주개발진흥법 제15조 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우주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최소배상한도액은 국내·외 보험시장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40) 김선이, 전계 논문, p.11.

41) 김선이, 전계 논문, p.12.

(7)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우주손해배상법 제8조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이 조항에서 우주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주손해책임조약 제10조제1항에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손해의 발생일 또는 책임져야 할 발사국이 확인한 일자 이후 1년 이내에 발사국에 제시될 수 있다는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다.

2. 미국 국가항공우주법상 손해배상책임

(1) 우주비행체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미국 국가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의 설치근거법인 국가항공우주법(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of 1958) 제308조(a)에 의하면 NASA의 우주선에 의하여 발사할 경우에 우주비행체 이용자가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지게 되며, NASA는 제3자 책임보험 적정한도와 내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NASA는 보험금액이 부족할 경우 지출 가능한 예산으로 우주물체 이용자를 위해 제3자 손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나, 가능한 최대한도를 이용자로부터 상환받는다. 또한 제308조(b)에 의하면 NASA가 책임보험의 내용, 가액 및 현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주비행체 이용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당해 이용자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보험에 의해 배상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범위에 대해서만 그러하다.⁴²⁾

(2) 우주비행체 개발자의 손해배상책임

국가항공우주법 제309조에 의하면 NASA가 우주비행체 개발자(자연인 불 포함)를 위해 당해 법인과 의 약정으로 책임보험 또는 책임대체부담을 제공할 수 있다. 우주비행체 개발자는 제3자 또는 미국정부로부터 제기되는 손해배상 최대액에 대

42) 김선이, 전계 논문, p.16.

한 보험 또는 재정적 책임을 NASA로부터 제공받는다. 또한 NASA가 제시한 안전 기준 요구조건을 개발자가 충족하지 않으면 NASA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대체부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NASA는 개발자와 상호책임 면제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우주비행체 개발자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⁴³⁾

(3) 민간 위성발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미국 연방법규 Title 49 Subtitle IX 상업우주발사행위 제70112조에 의하면 위성발사 사고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배상의 최대액을 산정하여 위성발사 면허보유자에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제3자의 사망·상해·재산상 손실의 경우 5억 달러의 한도로 그리고 미국정부 재산상의 손실의 경우 10억 달러의 한도로 하고 있다. 제70113조에 의하면 운송부장관은 제3자가 위성발사 면허소유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미국정부에 의한 지급을 제공한다. 다만, 그 지급은 제70112조의 보험한도를 초과하고 15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의 범위로 한다. 그러나 15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책임의 주체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⁴⁴⁾

3. 러시아 연방우주활동법상 손해배상책임

(1) 우주기술 개발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러시아 우주활동법(Law on Space Activity of 1993) 제25조에 의하면 과학과 국가경제를 위하여 기관 및 개인이 스스로 우주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또는 우주기술의 개발 및 사용이 행하여지는 경우 러시아연방 법률이 정하여져 있는 금액으로 의무적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의무적인 보험의 보험금액은 제3자에 대한 재산상의 멸실에 충당된다.⁴⁵⁾

43) 김선이, 전계 논문, p.16.

44) 김선이, 전계 논문, p.17.

45) 김선이, 전계 논문, p.17.

(2) 우주활동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부담

우주활동법 제30조에 의하면 우주활동 수행 중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는 관련된 우주산업의 운영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 의하여 배상된다. 만일 이러한 손해가 우주산업의 생산과 사용으로 인한 과실의 결과라면 손해에 대한 책임은 부분적으로 해당기관이나 개인이 부담한다. 외계를 제외한 러시아연방의 영토 또는 주정부의 관할권 밖에 있는 러시아연방의 우주물체에 의하여 가해진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것으로부터 가해자의 과실과 무관하게 발생한다. 지구 표면을 제외한 어떤 장소에서라도 러시아연방의 우주물체 또는 다른 우주물체에 의해 그러한 우주물체내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관이나 개인의 과실은 그들의 과실과 그 과실에 후자의 경우, 손해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비율로 나타나야 한다. 우주활동의 수행 중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가해진 손해에 대하여 우주산업의 생산과 사용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책임은 보험총액 또는 우주산업과 우주활동에 연관된 위험에 대한 보험의 계약이 제공하는 손해보상에 국한된다. 만약 보험총액 또는 손해보상이 우주활동의 수행 중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가해진 손해에 대한 보상에 불충분하다면, 러시아연방방법으로 명기된 방법에 의하여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이 발생될 수 있다.⁴⁶⁾

4. 프랑스 우주활동법상 손해배상책임

(1) 제3자에 대한 책임

프랑스 우주활동법(Space Operation Act of 2008) 제13조에 의하면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주활동으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책임은 져야 한다. ① 지상 또는 영공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 지상 또는 영공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동법 제14조에 의하면 정부가 1967년 우주조약이나 1972년 책임조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 프랑스 정부가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었던 손해를 야기시켰던 운영

46) 김선이, 전계 논문, p.18.

자에게 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정부가 운영자의 보험이나 재정적 보증으로부터 배상의 최고 범위까지 보상받지 못하였던 범위까지이다.⁴⁷⁾

(2) 우주활동에 참가한 사람에 대한 책임

프랑스 우주활동법 제19조에 의하면 제6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보험이나 재정적 보증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정부의 보증이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우주활동에 참가한 사람 중의 하나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우주물체의 생산에 참가한 사람 중의 하나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⁴⁸⁾

5. 호주 우주활동법상 손해배상책임

(1) 우주사고 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호주 우주활동법(Space Activities Act of 1998) 제3장에 의하면 호주에서 수행하는 모든 우주활동은 국적을 분문하고 호주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호주 국적자의 호주 외부에서 수행되는 우주활동 역시 이러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호주정부의 허가를 얻은 발사자는 반드시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에서의 손해배상액은 발생 가능한 최대손해액을 미달하면 안된다.

(2)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우주활동법 제4장에 의하면 우주물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호주가 발사국이거나 동 물체의 발사관리자가 될 경우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이에 관한 모든 법률행위는 1년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 호주 밖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호주정부는 국제법 하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면 발사운영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호주정부에게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호주의 발사운영자는 발사 허가 하에서 요구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발생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47) 조홍제, “우주활동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의 우주 관련법과 우리나라 관련법 개선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1. 5. 6, p.13.

48) 조홍제, 전계 논문, p. 14.

서만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발사에 책임있는 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서 보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책임자 또는 관련 당사자의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3자의 요구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사운영자는 보험금에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호주정부가 보험금액의 초과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⁴⁹⁾

IV. 우주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검토

1. Iridium 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로 인한 발사국의 책임관련 분쟁(Collision between Iridium 33 and Cosmos 2251)

(1) 사건의 개요 및 적용법규

최근에 우주공간에서 우주물체 상호 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발사국의 과실책임 관련 분쟁사건을 보면, 2009년 2월 10일 시베리아 북부 약 800km 상공에서 활동 중인 미국의 상업통신위성 Iridium 33과 기능이 소멸된 러시아 통신위성 Cosmos 2251 간에 선례가 없는 충돌이 발생하였다.

양 위성의 충돌 당시 미국과 러시아 모두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책임조약의 당사국이며, 동 조약상의 발사국 지위에 있었으므로,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양 위성 충돌은 1972년 우주손해책임조약 제3조에 의거하여 발사국은 손해가 그의 과실 또는 책임져야할 사람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입증부담은 손해를 입어 배상을 청구하는 국가가 상대방 측의 과실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 있어서 과실(fault)은 부주의(negligence)와 같은 것이며, 부주의는 주의의무를 근거로 하여 결정된다.

Iridium 33과 Cosmos 2251 충돌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① 누가 어떠한 의무가 있는가, ② 기능이 소멸된 위성을 궤도비행토록 남겨둔 것이 과실행위인가 여부,

49) 김선이, 전계 논문, p.20.

③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가, ④ 누가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등이다.⁵⁰⁾

(2) 러시아 측의 과실문제

러시아는 Cosmos 2251가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폐기하였으나 결코 위성을 궤도비행으로부터 제거할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그것은 다른 국가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용되었거나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위가 우주조약 제9조에 의거하여 러시아의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미국은 러시아 측의 이러한 부주의가 러시아의 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시도하는 반면에, 러시아는 미국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Iridium 33 위성의 파괴에 대하여 미국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주시대의 시작 이래 모든 발사국들은 그들의 기능이 소멸된 위성을 폐기하여 왔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바, 지난 50년 이상 어떠한 국가도 이러한 상례적인 관행에 심각하게 반대해 오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한 국가의 관행이 우주조약 제9조에 의거한 한 국가의 일반적 의무를 변경하거나 명확히 하는 것을 발전시켜 왔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기능이 소멸된 Cosmos 2251 위성을 궤도비행토록 남겨둔 것에 대하여 부주의나 과실이 없으며 Iridium 33의 파괴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반면에, 미국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주의(기여적 부주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⁵¹⁾

(3) 미국 측의 과실문제

미국과 러시아는 모두 Iridium 33에 대한 발사국이였다. 이것은 미국이 이 사건에서 그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 우주손해책임협약은 특별히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우주조약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만약 러시아가 미국 측의 과실을 입증한다면

50) Ram Jakhu, "Question of Liability in Cosmos 2251 and Iridium 33 Collision in Space", 「2009년도 제43회 국제항공우주법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9. 10. 16, pp.169-172.

51) Ram Jakhu, *op.cit.*, p.174.

미국은 러시아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미국은 Iridium 33 위성을 UN에 등록하지 않았던 바, 이것은 1976년 우주물체등록조약상 미국의 등록의무의 위반이다. 더욱이 이러한 비등록은 Iridium 33에 대한 관할과 통제를 행사하는 국가에 대하여 미국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Iridium 회사는 Iridium 33의 충돌에 대하여 사전 경고를 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충돌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설립한 미국의 우주감시망은 Iridium 33을 감시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Cosmos 2251과 그의 충돌 가능성을 예언하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의 궤도비행을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적 행동을 취하도록 Iridium 관리자 측에게 지시하지 못하였다.

미국의 우주기술문제의 전문가인 Mark Gubrud에 의하면 논리적으로 예상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행동을 취할 책임은 활동 중인 위성 즉 Iridium 33의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Iridium 33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그의 부주의와 부작위로 인한 과실이 있으며, 미국과 그의 회사는 그 자신의 과실로 손실을 입었다. 만약 미국이 이 사건에서 과실이 있다면, 러시아는 Cosmos 2251의 파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를 위하여 러시아는 미국 측의 과실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입은 손해액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⁵²⁾

(4) 소결

Iridium-Cosmos 충돌사건은 미국과 러시아 상호 간의 이해에 의하여 해결된 것같이 보이는 바, 그것은 어느 측의 과실을 입증하거나 또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점차 우주공간은 붐벼지게 될 것이고, Iridium 33과 Cosmos 2251 충돌과 같은 사고들이 우주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Iridium 33과 Cosmos 2251 충돌은 우주안전기준, 우주교통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술적 및 규정적 해결 모두가 긴급히 요구된다는 것을 현저하게 하였다. 국제적 우주 안전 및 교통관리규정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하여 협상되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의 이행여부는 공평하고 정확한 사실 진술과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들 단체에

52) Ram Jakhu, *op.cit.*, p.175.

의하여 감시되어야 할 것이다.⁵³⁾

2. Cosmos 954호 위성추락으로 인한 발사국의 책임관련 분쟁 (Disintegration of Cosmos 954 over Canadian Territory)

(1) 사건의 개요

소련은 1977년 9월 18일 소련영내 기지에서 원자력 잠수함 탐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해양 정찰 감시위성으로 원자로가 탑재되어 있는 Cosmos 954호를 발사하였는데, 압력계통의 고장으로 동년 11월 1일부터 제멋대로 요동치기 시작하였고, 소련의 지상관제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위성이 지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이 위성이 1978년 1월 24일 지구의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분해되어 그 잔해가 캐나다 북서지역의 Alberta와 Saskatchewan 등 800km 지역에 걸쳐 떨어졌다.

캐나다는 위성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캐나다 상공에 위치하게 됨을 소련이 미리 통보하여 주지 않은데 대하여 소련 측에 항의하면서 위성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에 즉시 답변하도록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소련은 위성이 대기권에 들어올 때 모두 연소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일부 잔해가 Aleutian 열도 근방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현저한 위험은 없고 원자로는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분해된다고 답변하였다. 몇 주후 캐나다는 군과 원자력 관계기관을 동원하여 용해된 우라늄 방사능에 오염된 파편 등을 수거하여 국내의 원자력에너지연구소로 이송하고 영향을 받은 지역을 청소하였으며, 이 작업을 통하여 2개의 파편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⁵⁴⁾

(2) 캐나다의 손해배상청구액 및 배상문제 해결

캐나다는 위와 같은 방사능 오염사실을 소련과 UN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였으며,

53) Ram Jakhu, *op.cit.*, pp.176, 178.

54)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XVIII, No.4, July 1979, pp.902-904; 이영진 외 2인, “우주법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방향 연구 외교통상부 용역과제, 2008. 9. 30, p.115.

소련은 이러한 방사능 오염이 Cosmos 954호에서 유래하였을 인정하였다. 이에 캐나다는 1972년 우주손해책임조약 등 국제법에 근거하여 소련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즉 캐나다는 위성잔해 수색과 방사능 검사 및 청소작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중 일부를 배상액으로 소련에 청구하였는데, 1978년 1월 24일부터 동년 10월 15일 까지 2단계에 걸쳐 실시된 이 작업비용은 1단계가 12,048,239.1 캐나다 달러이고 2단계가 1,921,904.55 캐나다 달러였다. 캐나다는 1단계 비용 중에서 4,414,345.86 캐나다 달러, 2단계 비용 중에서 1,626,825.84 캐나다 달러, 총 6,041,174.70 캐나다 달러를 소련 측에 배상 청구하였다. 그 후 캐나다는 비용 산출을 수정하여 2단계 비용이 1,822,687.08 캐나다 달러이며 이 중 1,611,734.70 캐나다 달러를 배상액으로 산정, 총 6,026,083.56 캐나다 달러를 소련에 청구하면서 손해가 더 확인되면 추가 청구하겠다고 하였다.⁵⁵⁾

캐나다와 소련은 3년간의 교섭을 거쳐 1981년 4월 2일 모스크바에서 Cosmos 954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캐나다의 배상청구 해결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이 의정서에 의하면 소련은 1978년 1월 Cosmos 954호의 사고에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300만 캐나다 달러를 지급하고 캐나다는 이를 수락하여 배상문제를 해결하였다.⁵⁶⁾

(3) 캐나다의 손해배상청구 근거로서 적용법규

캐나다는 소련에 대한 배상청구서에서 법의 일반원칙을 비롯하여 실정국제법인 1967년 우주조약 제6조 및 제7조, 1972년 우주손해책임조약 제2조 그리고 1968년 구조 및 반환협정 제5조 등을 원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첫째, 캐나다는 Cosmos 954호 위성이 캐나다 영공 침입과 캐나다 영토에 있는 위성으로부터 발생한 위험한 방사능 파편들의 퇴적물이 캐나다 주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하면서, 국제선례들은 주권침해가 손해배상의무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여기서의 침해는 위성의 침입과 위험한 방사능 파편의 존재에 의해 이 영토에서 행해질 행위들을 결정하는 캐나다 주권의 방해라는 단순한 사실에 의해 성립

55)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XVIII. No.4, May 1979, pp.904-908; 이영진 외2인 전개보고서, p.116.

56)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XVIII. No.3, May 1981, pp.902-904; 이영진 외2인 전개보고서, p.116.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캐나다는 이 사건이 국제법의 일반원칙인 주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⁵⁷⁾

둘째, 1967년 우주조약 제7조는 “조약 당사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 공간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발사시키는 경우 또는 그 영역 혹은 시설로부터 물체가 발사되는 경우, 그의 우주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이 지구상, 대기권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공간에서 다른 조약당사국 또는 그의 자연인 혹은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소련은 조약당사국으로서 발사국이고, 여기서 말하는 ‘구성부분’에는 위성에 탑재한 원자로 자체 및 그의 잔해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련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캐나다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⁵⁸⁾

셋째, 1972년 우주손해책임조약 제2조에는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가 지상에 대해 발생시킨 손해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대하여 야기한 손해를 배상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절대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문언은 발사국의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해석되는 것이며,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⁹⁾

넷째, 1968년 구조 및 반환 협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우주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의 회수 반환은 발사기관이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의하면 그러한 회수 및 반환에 필요한 경비는 발사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발사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발사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⁶⁰⁾

(4) 소결

Cosmos 954호 추락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서 캐나다가 적용한 국제법의 일반원칙 및 우주관련 조약의 규정들이 충분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⁶¹⁾ 첫째, 캐나다가 이 사건이 국제법의 일반원칙인

57) Martin Dixon & Robert McCorquodale, *Cases &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2000, p.277; 이영진 외2인, 전계보고서, p.117.

58) 이영진 외2인, 전계보고서, p.117.

59) 이영진 외2인, 전계보고서, p.119.

60) 이영진 외2인, 전계보고서, p.118.

61) 이영진 외2인, 전계보고서, pp.117, 120.

주권침해에 해당하며 주권침해가 손해배상의무를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소련은 캐나다의 주권침해 의사는 물론 위성을 캐나다 영토에 추락시킬 계획이 전혀 없었고 위성을 불법적으로 기능하게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권이 침해당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는 것은 다소 애매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우주손해책임조약 제1조(a)는 “손해란 사람의 사망, 신체의 손상 혹은 기타 건강침해 또는 국가, 자연인, 법인 혹은 국제적 정부 간 기관의 재산의 멸실 혹은 손해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에서 기인하는 정신적 손해라든가 오염의 위험을 최저한으로 하기 위한 사전 대책비를 우주손해책임조약이 규정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의 문제가 된 경우에 손해의 문언적 해석을 포함하여 그것의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관계국 간의 대립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한다.

3. Martin Marietta의 위성 발사실패로 인한 발사자의 책임관련 소송(Martin Marietta Corporation v.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Satellite Organization (INTELSAT))

(1) 사건의 개요

Martin Marietta는 Titan III 로켓으로 2개의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Intelsat과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들 중 하나는 정확한 궤도에서 적정한 위치에 도달하는데 실패하였으며, 그 결과 Intelsat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다. 이에 따른 소송은 Intelsat과의 계약에서 Martin Marietta에게 이용 가능한 계약적 책임제한 및 구제의 강제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였는데, Martin Marietta는 ① Intelsat에게 이용 가능한 배타적 구제조항, ② 1978년 상업우주발사법(Commercial Space Launching Act of 1978)상 요구된 계약에서 소위 ‘상호 청구권 포기(cross-waiver)’의 확인 및 강제를 요구하였다.

한편 Intelsat은 반대청구에서 ① Martin Marietta가 의지했던 계약은 계약위반에 대한 그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았다는 것, ② Martin Marietta의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행할 의무를 포함하는 과실있는 프로그램 수립 및 시험이 계약을 위반하

였다는 것, ③ Martin Marietta가 그의 '주의의무(duty of care)'를 하지 않음으로서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 ④ Martin Marietta는 과실있는 허위진술을 하였고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⁶²⁾

(2) 위성발사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계약적 책임 문제

1990년 4월 5일 연방지방법원은 불법행위에 근거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위성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Intelsat의 손해는 성질상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것이었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이다. Maryland 법률에 의하면 한 당사자는 완전히 분리된 주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순전히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소송할 수 없다. 법원은 제3자 보험이나 서로 간에 위험을 분담시키기 위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동등하게 재치있는 당사자들은 주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일반적 불법행위 의무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합의된 계약적 조건들에 의하여 명시된 의무들에만 고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법원은 의회가 상업우주발사법에서 당사자들이 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는 일반적 원칙에 대한 예외를 새로 만들었다고 언급하면서, 상업우주발사법에 의하여 요구된 계약에서 상호 청구권 포기에 의하여 그들이 금지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Intelsat의 불법행위 청구들을 기각하였다. 계약위반의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Martin Marietta의 실행이 근본적 계약위반을 구성한다는 Intelsat의 청구를 거절하였다. 그 이유로 "Martin Marietta가 2개의 성공적 발사(1개는 성공함)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 또는 달리 근본적으로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구체제한 조항에 의하여 주어진 보호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⁶³⁾

(3) 소결

위와 같이 모든 Intelsat의 반대청구가 1991년 11월 19일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으며, 1992년 1월 Intelsat은 미국 항소법원에 지방법원의 결정을 항소하였다. Richmond 항소법원은 Martin Marietta가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best

62) I. H. Ph. Diederiks-Verschoor and V. Kopal, *op.cit.*, p.151.

63) I. H. Ph. Diederiks-Verschoor and V. Kopal, *op.cit.*, p.152.

effort)'을 하였는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그 결정을 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즉시 당사자들은 화해에 합의하였고 기각의 약정을 제출하였고, 1993년 10월 6일 법원은 화해를 승인하였고 그 사건을 기각하였다. 화해가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의 조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발사 후 2년 지나 우주비행사들은 위성에 모터를 장착시켜 그것을 원래 계획된 궤도에 밀어 올렸다.⁶⁴⁾

4. Westar VI 위성의 작동불량으로 인한 제조자의 책임관련 소송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1) 사건의 개요

1984년 2월 3일 Westar VI 위성이 우주왕복선의 화물실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위성이 왕복선으로부터 안전한 거리에 있었을 때 그의 교체로켓 모터가 화재로 탔다. Westar VI가 저궤도에 머무르도록 하고 그의 의도된 통신작용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모터는 적절하게 타는 것을 중지하였다. 이러한 사고 얼마 후 Palapa B-2의 소유자는 Westar VI의 작동불량이 오직 우발적인 탄소출구원추체의 고장으로 인한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위성 발사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Palpa B-2는 그들의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으며, 양 위성의 소유자들은 보험에 들었고 그들의 보험자들은 양 위성들이 전손으로 간주됨으로써 미화 15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해야만 했다.

이러한 사건에 이어 3개 미국 보험자들과 Palpa B-2 보험증권상의 보험자들 가운데 3개가 McDonnell Douglas와 하청계약자인 Thiokol과 Hitco를 상대로 그들이 위성 소유자들에게 지급하도록 요구된 금액을 보상하기 위하여 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⁶⁵⁾

(2) 위성 제조자의 과실문제

원고(보험자)들은 특히 McDonnell Douglas, 그의 하청계약자 Thiokol과 Thiokol의 하청계약자 Hitco가 문제의 2개 출구원추체 각각의 디자인, 제작 및 시험에 과실이

64) I. H. Ph. Diederiks-Verschoor and V. Kopal, *op.cit.*, p.152.

65) I. H. Ph. Diederiks-Verschoor and V. Kopal, *op.cit.*, p.149.

있었으며, 그리고 그들은 출구원추체를 위해 보다 안전한 원료를 결정하는데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또한 McDonnell Douglas가 Westar VI 위성의 불운에 이어 Palapa B-2의 소유자들에게 멸실의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⁶⁶⁾

(3) 소결

위와 같은 모든 주장들은 McDonnell Douglas와 체결된 계약들을 근거로 하였으나, McDonnell Douglas가 과실에 대해 책임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그들은 기각되었고 또한 그의 하청계약자들을 보호하였다. 미국 전문가들은 상업우주벤처사업에서 잠재적인 민사책임은 그 벤처사업에서 사용되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참가하는 크거나 작은 개인 또는 기관에 미친다는 것을 이 사건으로부터 결론지었다. 따라서 상업우주벤처사업에 참가하는 기관의 책임은 법률과 실제의 상업적 고려에 의해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까지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⁶⁷⁾

5. 평가

우주법에는 손해배상책임의 규칙들을 포함하는 2개 조약 즉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책임조약이 있는 바, 후자는 본질적으로 전자를 정교하게 만든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어야 할 것은 이들 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우주에서 상업활동은 겨우 시작되었으므로 조약에서 규정된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국가의 우주활동을 위해 국가의 책임에 관계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주활동에 있어서 대규모의 확장이 일어났고 사기업이 참가하기 시작했을 때 보험자의 운명이 제조자의 그것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보험자의 위치뿐만 아니라 사적 제조자들과 이용자들의 책임에 관한 문제도 표면화되었다. 제조자의 위치는 주로 미국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의 개념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데, 그것은 결합있는 제조물로 인한 손해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에 관계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비록 지역협정 및 유럽공동체의 명령(Directives of European Community)

66) I. H. Ph. Diederiks-Verschoor and V. Kopal, *op.cit.*, p.149.

67) I. H. Ph. Diederiks-Verschoor and V. Kopal, *op.cit.*, p.149.

에는 있을지라도 우주법이나 항공법에서 제조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협약은 없다. 여기에서의 기초는 항상 제조자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다.

대부분의 우주활동이 미국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 법원판결은 특히 중요하며, 위에서 그 이유가 인용된 **Martin Marietta** 사건은 적절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의 결과는 ① 사적 상업발사산업을 위한 부분, ② 일반적 우주법을 위한 부분 등 2가지 부분을 가진다. 미국 사적 상업발사산업을 위하여 법원의 결정은 중대한 과실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모든 불법행위 청구의 포기의 강제를 상업우주발사법의 기초가 되는 ‘공서양속(public policy)’이 지지하고 있다는 법원의 추론에 비추어 매우 호의적이고 고무적이다. 그러나 보통은 미국의 대부분 주들에서 이러한 책임의 계약적 포기의 강제는 금지되고 있다.

우주법에서 이러한 결정의 결과들은 다른 성질이 있으므로 미국뿐만 아니라 우주활동에 종사하는 다른 국가들에서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그것은 법률학 및 아마도 국내적 및 국제적으로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⁶⁸⁾

지난 수년간 항공 및 우주법에 관한 사건들에서 ‘최선의 노력(best effort)’ 용어가 현저하게 여러 번 사용되어 왔는데, 이 용어의 해석 및 사건 결정에서 그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위에서 기술한 **Martin Marietta** 사건에서 계약 제1조(2)는 ‘최선의 노력’을 합리적이고 신중한 발사체의 제조자 및 발사서비스의 제공자와 같이 훌륭하고 능숙한 태도로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소송에서 하급법원은 **Intelsat**의 계약위반 청구를 기각하였고, **Martin Marietta**가 그의 ‘최선의 노력’을 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Intelsat**의 주장을 부인하였다. 또한 하급법원은 발사서비스계약에서 분명하게 그리고 모호하지 않게 계약위반소송을 금지하였다고 결정하였다. 반대로 항소법원은 **Intelsat**이 최선의 노력을 행할 **Martin Marietta**의 계약적 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사실들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없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따라서 그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환송하였다.⁶⁹⁾

68) I. H. Ph. Diederiks-Verschoor and V. Kopal, *op.cit.*, p.156.

69) I. H. Ph. Diederiks-Verschoor and V. Kopal, *op.cit.*, pp.157-158.

V. 우주손해배상책임 관련법규의 개선방안

1.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

(1)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우주손해책임조약 제8조제1항은 손해를 입은 국가 또는 자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손해를 입은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조약 제22조제1항은 국가에 대해 언급된 사항은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어느 정부 간 국제기구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손해를 입은 국제기구인가 아니면 그 국제기구가 위치하고 있는 국가인 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바,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청구위원회 결정의 구속력 확보

우주손해책임조약 제14조에 의하면 외교적 교섭을 통해 배상청구가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청구위원회가 구성된다. 한편 동 조약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청구위원회의 결정은 당사국이 동의한 경우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국이 동의한 경우라는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종국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⁷⁰⁾

2.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

(1) 손해배상 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우주손해배상법 제4호제4호는 우주손해의 정의에서 우주손해를 인적 손해와 물질적 손해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는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를 모두 직접손해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물체의 발사·운용 등으로 발생된 손해의 배상범위를 직접손해에

70) 문준조·김선이, 「현대우주법론」, 한국법제연구원, 2009. p.166.

한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구제에 충실하기 위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간접손해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와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간접손해도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불법행위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배상의 범위에 간접손해를 포함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⁷¹⁾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우주손해배상책임법 제5조는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를 2천 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상법 제770조 및 제797조 그리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국제통화기금 (IMF)의 통화단위인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SDR)을 계산단위로 도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주손해배상법상의 책임한도액 통화단위를 ‘계산단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⁷²⁾

(3) 공동 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책임조약 제52조는 2개 이상 국가가 공동으로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경우의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우주손해배상법에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경우 이들 개인 또는 법인이 우주물체의 발사·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동 발사에 참가한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⁷³⁾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우주손해배상법상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우주물체 발사자와 피해자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와 같은 분쟁 조정기관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⁷⁴⁾

71) 김선이, 전계 논문, p.6.

72) 이영진 외 2인, 전계 보고서, p.179.

73) 이영진 외 2인, 전계 보고서, p.180.

VI. 결 론

최근 우주과학 기술의 발달과 우주개발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국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차원의 우주활동은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우주활동을 위한 우주물체의 발사·운영과정에서 항상 고도의 위험성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우주활동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하여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미리 구축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우주손해배상책임 관련 분쟁사건으로서, 2009년 2월 10일 시베리아 타이미르 반도 약 800km 상공에서 미국의 상업통신위성 Iridium 33과 기능이 소멸된 러시아 통신위성 Cosmos 2251이 충돌하였으며, 충돌로 발생한 파편은 우주에서 기능 중인 제3국의 인공위성과 제2차 충돌 가능성이 있어 손해가 연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손해에 대한 책임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적 구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책임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내입법으로는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주손해배상책임 관련 국제조약 가운데 특히 우주손해책임조약은 우주손해배상에 있어서 가장 정교한 규정을 가진 조약이지만, 손해배상을 위한 청구위원회의 결정은 당사국이 동의한 경우에만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당사국의 동의가 없더라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도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바, 우주사고로 인한 제3자의 간접손해에 대하여도 우주물체 발사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또한 우주손해배상문제에 관한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각각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함으로써 본격적인 우주활동국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가

74) 이영진 외 2인, 전계 보고서, p.55.

나로 우주센터의 발사장에서 우주물체를 발사하고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지상, 해상 및 비행안전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은 바, 특히 우주활동에 있어서 국제조약상의 국제책임 그리고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주물체 발사기관 및 정부는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군법무실, 「우주법 해설서」, 2008. 10.
- 김두환, “한국에 있어 우주법의 주요내용, 논평과 장래의 과제”,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4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9. 12.
- 김선이, “우주손해배상법에 관한 약간의 고찰”,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2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7. 12.
- 문준조 · 김선이, 「현대우주법론」, 한국법제연구원, 2009.
- 박원화, 「우주법」, 명지출판사, 2009.
- 신성환, “KSLV 발사에 따른 제작 및 제3자 피해 책임에 대한 우주법적 소고”,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1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6. 6.
- 이영진 · 김두환 · 조홍제, “우주법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방향 연구”, 외교통상부 용역과제, 2008. 9. 30.
- 한국법제연구원, 「주요국가의 우주관련법과 우리나라 관련법 개선 워크숍자료집」, 2011.5. 6.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법 및 비확산체제 관련 정책자료」, 2004. 5.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항공운송 및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 및 외국 입법례 분석과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과제”, 2007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2007. 10.
- 홍순길 · 신흥균 · 김종복, 「신국제항공우주법」, 한국항공대학교 출판부, 2006.
- 李康斌, “宇宙産業の 危険管理と宇宙保険”, 「紀要」第2卷 第2号, 中央學院大學社會システム研究所, 2002. 2.
- 龍澤邦彦, 「宇宙法システム」, 中央學院大學地方自治研究センター, 2000.
- 栗林忠男, 「解説 宇宙法資料集」, 慶應通信, 1995.
- Cheng, Bin,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Clarendon Press Oxford, 1997.
- Diederiks-Verschoor, I. H. Ph. and Kopal, V., *An Introduction to Space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 Goh, Gerardine Meishan, *Dispute Settlement in International Space Law*, Martius Nijhoff Publishers, 2007.

- Haanapel, P.P.C., *The Law and Policy of Air Space and Outer Space-A Comparative Approach*,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 Jasentuliyana, Nandasiri, *International Space Law and the United Na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 Lyll, Francis and Lasen, Paul. B., *Space Law A Treatise*,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9.
- Viikari, Lotta, *The Environmental Element in Space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8
- Won Hwa Park, "Outer Space Activities and Observation of Related Laws of Korea",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Vol.24 No.2,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December 2009.

초 록

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과실책임, 연대책임, 배상청구권자, 배상청구방법, 배상청구기한,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손해배상액, 청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발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로 Iridium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 사건, Cosmos 954 위성추락 사건, Martin Marietta의 위성발사 실패 사건, Westar VI 위성 작동불량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우주사건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국, 발사자 및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문제에 관련하여 절대책임(엄격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청구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우주활동 과정에서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국제적 책임 및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정부 및 우주물체 발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우주조약, 우주손해책임조약, 우주손해배상법, 국제적 책임, 손해배상책임, 우주활동, 우주손해

Abstract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Activity - With reference to Relevant Cases -

Lee, Kang-B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on the liability and cases for space damage with reference to the space activity under the international space treaty and national space law of major countries.

The United Nations has adopted two treaties relating to the liability for space damage as follows: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and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Korea has enacted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relating to the liability for space damages.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regulates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national activities in outer space, and the national tort liability for damage by space launching object.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regulates the absolute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faulty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person claiming for compensation, the claim method for compensation, the claim period of compensation, the claim for compensation and local remedy, the compensation amount for damage by a launching stat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laims Commission.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in Korea regulates the definition of space damage, the relation of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and the international treaty, the non-faulty liability for damage by a launching person, the concentration of liability and recourse by a launching person, the exclusion of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limit amount of the liability for damage by a launching person, the cover of the liability insurance by a launching

* Emeritus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Sangji University

person, the measures and assistance by the government in case of occurring the space damage, and the exercise period of the claim right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ere are several cases with reference to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accidents as follows: the Collision between Iridium 33 and Cosmos 2251, the Disintegration of Cosmos 954 over Canadian Territory, the Failure of Satellite Launching by Martin Marietta, and the Malfunctioning of Westar VI Satellite. In the disputes and lawsuits due to such space accidents,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liability for space damage have been settled by the application of absolute(strict) liability principle or faulty liability principle.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the clear definition in respect of the claimer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e measure in respect of the enforcement of decision by the Claims Commission.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in Korea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the inclusion of indirect damage into the definition of space damage, the change of the currency unit of the limit amount of liability for damage, the establishment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nd recourse right for damage by space joint launching pers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pace Damage Compensation Review Commission.

Korea has built the space center at Oinarodo, Goheung Province in June 2009. Korea has launched the first small launch vehicle KSLV-1 at the Naro Space Center in August 2009 and June 2010.

In Korea, it will be the possibility to be occurred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nd the liability for space damage in the course of space activity.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and launching organization should make the legal and systematic policy to cope with such problems.

Key Words : Space Treaty, Space Liability Convention,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International liability, Liability for damage, Space activity, Space damage